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 하는 성장
	보도	2019.10.18.(금) 조간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 연 준 (02-2100-2680)	담 당 자	심원태 사무관 (2100-2688)	

제 목 :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
◆ **과태료 부과기준***을 신설하여 ① **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**, ② **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**

*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

I 주요 개정내용

1.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
□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*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
* 동 위반행위는 ①증권선물위원회 조사·조치 대상이며 ②금융회사 外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·제재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

2.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*

*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('18.5월) 등의 후속조치

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

(현행) 검사·제재규정				(개선) 조사업무규정				
동기 결과	상	중	하	→	동기 결과	상	중	하
중 대	100%	80%	60%		중 대	100%	90%	75%
보 통	80%	60%	40%		보 통	90%	75%	50%
경 미	60%	40%	20%		경 미	75%	50%	25%

②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%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3.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

① 소액공모(공모금액 10억원 미만)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(10억원 이상)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

-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
-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%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, 자진시정·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(최대 50%)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

(예시) 소액공모 과태료 > 증권신고서 과징금

① 위반금액이 9.9억원인 경우(소액공모)

동기 위반결과	상(고의)	중(중과실)	하(과실)
중 대	60백만원	48백만원	36백만원
보 통	48백만원	36백만원	24백만원
경 미	36백만원	24백만원	12백만원

② 위반금액이 10억원인 경우(증권신고서)

위반행위 중요도	상	중	하
감안사유 상환정정사유발생	30백만원	24백만원	18백만원
해당사항 없음	24백만원	18백만원	12백만원
하환정정사유발생	18백만원	12백만원	6백만원

⇒ 감경사유·폭 확대로 최대 감경비율(50%) 적용시 과태료 18백만원 (36백만원 X 50%)

②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, 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

-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나,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 부과
-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·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

③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(5년 → 1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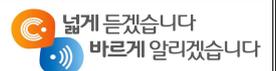
II 향후계획

-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("19.10.17일~11.26일) 및 규제·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("20.1분기중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